

#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의 여성친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안산시 공공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An Assessment of Woman Friendliness of the City from Gender-Sensitive Perspective  
View Point

—Focused on a Case of Ansan City Public Design Policy—

하재경 | Ha, Jae-Kyung

정회원, 안산공과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

## Abstracts

As the city have been enlarged bigger and more complicated recently, a discussion about a city right, started on the base of perception that a city must be recognized as a public resource and the value. A city rights imply equal use and participation in these city resource. From a start of modern city, a city space have been developed mainly, as a man's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area, but now, to ensure a woman's city right is getting an important factor of citizen's settlement. Then many domestic cities tries to promote a woman friendly city cre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oncept of woman friendly city, based on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view point and to make an assessment index of Woman Friendliness of the City (WFC). In a case of Ansan City which city is in the planning stage of application for a woman friendly city

---

## Keywords

Gender Sensitivity, Woman Friendly, City Right , Woman Friendliness of the City(WFC).

## 키워드

성인지, 여성친화도시, 도시권, 도시의 여성친화도

---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안산공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세기 후반의 도시는 ‘풍요사회’로 대표되는 성장과 발전 일변도의 공간으로,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을 증시하며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 교통문제, 슬럼화 등, 도시 밀집 화에 따른 역기능의 발생하였으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공적(公的) 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21세기 도시가, 남성위주의 산업과 경제 활동공간으로 출발한 근대도시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거주자와 도시사용자 모두가 공유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자원이며, 가치로써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자원에 대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공평한 사용의 권리가 도시권(都市權)이다. 도시권이란 도시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도시계획과 실제운용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의 도시권은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여성이 도시의 사용자 및 계획자로서 배제되어 왔음이 지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UN-HABITAT)에서 인간정주를 위해 성 평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 자료의 성 분석 및 통계의 확보와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 도시의 개념과 특징을 성 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고, 국내 여성친화 도시의 조성과정과 발전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시의 여성친화도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정책 분야에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 사례로 선정한 경기도 안산시(시화 반월 공업단지와 시화호, 여성과 아동관련 범죄발생 도시와 같은 기존의 부정적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안산시 경관 기본계획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공간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2011년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sup>1)</sup> 지정에 공모를 준비 중인 도시이다. 안산시의 여성친화도 현황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안

1) 여성가족부는 2009년 익산시, 여주시, 2010년은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서울시 강남구, 당진군, 대구시 중구 및 달서구 총 10개의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시가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 도시 공간 정책과 지역 특수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① 문헌고찰을 통해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친화 도시에 관한 이론을 고찰한다. ② 선행연구와 국내외 여성 친화도시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여성친화도 평가를 위한 도시의 지표를 구성한다. ③ 여성 친화 도시의 지표와 안산시 공공 디자인 관련 정책 사례를 비교,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여성친화도시의 조건 중 환경, 교통, 공공안전과 같은 도시의 하드웨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복지, 교육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주로 환경, 교통, 공공안전과 같은 도시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도시 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 2. 문헌 및 관련이론

### 2.1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의 성 인지적 관점은 궁극적으로 도시기능에 대한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등에 있어 성 평형성(gender-equality)의 획득을 의미한다. 성 인지적 관점은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북경, 1995)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성 주류화란 ‘사회의 주류 영역에 젠더를 통합하는 것’<sup>2)</sup>으로 여성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여성정책의 차원이 아닌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초기의 여성정책이 ‘여성중심(WID: Woman in Development)’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프로젝트나 적은 예산에 기초하여 즉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치료적 측면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핵심으로 보는 젠더적 접근(GAD: Gender and Development)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남성 중심

2) 김양희, 국가발전 정책의 젠더 메인스트리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적으로 구성된 주류 영역의 시스템과 문화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주류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근의 여성친화 도시 혹은 양성 평등 도시에 관한 담론은, 도시 개발 혹은 도시 관련 정책이라는 주류 정책에, 과거 미흡했던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었음을 의미하며, 여성의 도시권에 대한 문제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가족, 사회적 소외계층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2.2 여성 친화도시(Woman Friendly City)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생활 속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1970년대 북미의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 후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을 고려한 도시에 대한 모색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제10조<sup>3)</sup>의 내용을 근거로 도시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 의무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시권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는 지역으로 성 평등한 인간정주개념이 실현된 도시를 의미한다. 2009년 3월 국내 제1호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와 여성가족부의 협약서에도 여성 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본론

국내에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의 성별 영향평가<sup>4)</sup> 및 성인지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은 <표1.>와 같다. 여성 가족부는 여성친화 도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2010년 여성친화 도시조성 매뉴얼을 구성하고 익산시를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하였고 여수시를 제2호로 지정 하였다. 익산, 여수와 여성친화 도시를 추진예정인 대구혁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사례를 여성친화 도시의 개념을 수용, 확산하는 초기단계의 발전사례라 한다면, 서울특별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친화 도시의 개념을 지역발전의 특화전략으로 채택하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지역 특화단계로 발전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사례를 도시개발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1단계,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고, 관련정책을 개발 및 시행하여 지역 특화과제로 발굴하고 있는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국내 도시의 성별영향평가(GIA) 및 성인지 분석 현황

년도	자치단체	내용
2004-2007	경기도	김포신도시 건설사업
	대구	대구 혁신도시(팔공이노벨리)건설사업
	충북	다목적 광장 및 컴퓨터조성사업(자체평가)
2008 (자체평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여성 친화적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연구와 전문가 조사 및 FGI(Focused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실시
	서울 특별시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금천구의 도시정비 및 공공디자인 사업에 성별영향 차체 평가 수행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반영 -광주시의 여성 친화적 경안근린 공원조성 -안산시의 CPTED기반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왕시의 여성 친화적 문화공원 조성사업 -안성시의 여성 친화적 도시건설
2008 (자체평가)	부산 광역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사업,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성별영향평가
	대구 광역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에 성별영향평가
	인천 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양성평등시설 확충방안
	광주 광역시	도로안내관정비,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조성에 성별영향평가
	대전 광역시	-동구의 여성 친화적 관암 근린공원 및 휴식 공간조성 -서구의 밝은거리 조성사업
	울산 광역시	혁신도시U-생활안전서비스 구축
	충청남도	성인지 관점의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사업
제주도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 및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성별영향평가	

#### (1) 1단계-여성친화도시 개념의 수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첫 단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추진체계 및 시민 참여의 기

3)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4) 성별영향평가(GIA: Gender Impact Assessment)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이 성 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여성가족부)5)을 마련하고, 국내 여성친화도시 선정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영역은 도시의 하드웨어에 속하는 도시 기반 영역과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공공서비스 및 제도인프라 영역으로 구분된다.<표 2.>

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영역

영역	도시기반 (하드웨어)			공공서비스 (소프트웨어)			제도 인프라
	도시 기반 시설	공공 시설	주거 단지	일	돌봄/교육	여가 문화	

위의 내용 중 여성 친화적인 도시기반은 주거 및 공적인 환경 이용의 자유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 및 약자에게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제거된, 안전한 공간 환경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도시기반 조성관련 사업의 평가 지표는 <표 3.>와 같다.

위의 내용 중 여성 친화적인 도시기반은 주거 및 공적인 환경 이용의 자유를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여성 및 약자에게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제거된, 안전한 공간 환경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 친화적인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여성과 남성 각각의 경험과 일상을 반영한 성인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시공간에 대한 성인지적 측면은 행정, 계획, 설계, 시공 전 부분에서 여성친화적인 여건의 조성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의 수립 시 해당 도시의 여성친화성 여건 검토를 위해서는

표 3.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여성친화성 평가지표

구분	여성친화성 평가지표
도시 기반 시설	도로 및 교통 1. 도로 및 교통체계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는가? -인도의 우선적 확보 -Barrier Free개념에 입각한 보행로 조성 -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포장 -약자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2. 약자들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은 안전하고 편리한가? -승강장 및 환승장소의 밝은 조명 설치

5)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조성 매뉴얼 연구, 2010, 연구보고,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계단과 램프의 동시 설치 -야간 지하통행시 밝은 조명설치를 통한 위험해소 -교통 및 지역안내체계 구축 -유모차 이용 자녀 동반 가족 전용주차 공간 제공
공원 및 녹지	1. 공원 및 녹지공간에서 약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요인은 없는가? -수목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개방성의 유지 -놀이시설 이용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휴식용 벤취 및 평상 등의 시설물 설치 -여성화장실 위치선정에 위협요인 제거 2.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여아와 남아의 취향을 모두 고려한 놀이 공간의 확보 -성인 여성과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공원 및 녹지 내 성평등 보육공간 마련(어머니를 위한 수유실, 남성화장실 내 유아 돌봄공간 확보 등)
산업	1. 주거지와 일터는 인접해 있는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주거지와 일터사이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일터 인근에서 복합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2.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의 기회 또한 확보할 수 있는가? -도시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탁아 및 보육시설 설치 (Day Care센터)

다음의 내용6)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법제도의 내용정비:  
도시계획의 각종 법령은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는가?
- 최소한의 기준마련:  
각종 계획과 설계지침 등은 여성을 고려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가?
-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위원회 및 해당 부서의 여성 참여는 30%이상 되는가? (혹은 여성전문가 및 여성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설계와 시공에 있어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가?
- 교통체계의 여성편리성 보장:  
거리와 교통체계는 여성과 임신부, 아동을 동반한 여성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는가?
- 도시디자인과 조명 등에서 여성과 여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6)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2009, 연구보고.

- 성별영향평가 실시여부:

도시의 주요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 반영하고 있는가?

(2) 2단계-지역 특수 과제의 발굴과 특성화 전략추진

구체적인 도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여행(女幸) 시설 인증평가<sup>7)</sup> 사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2단계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의 요구 수렴 및 성인지 정책화, 추진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컨설팅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여성친화 도시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의 여성의 도시환경 만족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여행(女幸)도시의 정착을 위한 여행시설 인증은 편의(Convenience), 배려(Consideration), 안전(Safety), 쾌적(Amenity)의 핵심개념으로 구성된다.

표 4. 서울시 여행(女幸)시설 인증의 핵심개념

편의 (Convenience)	-여성의 편의성 확보 -사람 중심의 도시시설물 정비를 권장 -필요공간의 효율성과 질서 확립
배려 (Consideration)	-자녀, 노부모 모두를 생각하는 도시환경조성 -공공 교류기능의 확대 -도시기능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
안전 (Safety)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와 장애 요소제거 -범죄 예방과 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쾌적 (Amenity)	-경관과 시설들의 조화로운 구성 -환경 친화적인 도시조성 -위생적인 도시환경 조성

서울시는 2007년 여성들의 도시시설 이용시 불편, 불안, 불쾌감 조사(인터넷 여론조사)결과와 2008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도시시설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시설만족도가 낮은 시설물(길, 화장실, 주차장, 공원, 아파트)에 대한 실천목표와 구체적 평가 지침을 작성, 활용하고 있다. 평가기준표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권고로 제안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 <표 5.>

7)자료출처: 서영주, 황치석,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평가 현황과 과제, 2009, 정책개발 29, 서울시

표 5. 서울시 여행(女幸)시설 평가 기준표 (필수항목)

평가 시설	평가기준표(필수항목)
화장실 (7)	여성변기수 확보 (1:1 이상)
	어린이용 시설 (세면대, 대소변기, 기저귀 교환대)
	편의시설(손건조기, 종이타월)
	내부 비상벨 설치
	적정조도(실내 150~200Lux)
	편의시설(세면기 주변 선반, 걸이 등)
지하 주차장 (5)	부스 출입문 적정틈새(바닥에서 6~8cm)
	여성우선 주차면 확보(주차면 20%이상, 2.3m*5m이상)
	여성우선 주차면 출입용이성(출입구 30m이내 구역)
	여성 우선 주차구역 주변 시야확보
지상 주차장 (4)	여성 우선 주차구역 조도(130Lux 이상)
	CCTV, 비상벨 설치
	여성우선 주차면 확보(주차면 20%이상, 2.3m*5m이상)
	여성우선 주차면 출입용이성(출입구 30m이내 구역)
공원 (9)	여성 우선 주차구역 주변 시야확보
	여성우선 주차구역 조도(130Lux 이상)
	여성친화거리 조성(꽃길,휴게벤치,가로등,음악스피커)
	휴게공간의 고려(간격 20m이내 휴게의자 설치)
	조경물의 시야확보(보행로에 개방된 조경조성)
	휴식공간의 시야확보(개방감 유지)
	CCTV설치(산책로 및 주요시설물)
	인터폰, 비상벨 설치(적정위치 다수)
	외부조도(6~15Lux)
*(대공원)시설물의 시야확보(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12)	*(대공원)사각지대의 제거
	여성친화보도 설치(최소폭1.2m유지, 단차 없애기)
	주부전용공간 구성(세대 내 공간의 할애 또는 겸용)
	음식물쓰레기설치기의 설치(탈수,건조,건조분쇄처리기)
	여성안전귀가로의 확보 (40~60Lux확보,CCTV,안내표지판)
	여성친화보도,외부공간 조도확보 (20~30m이내 보행등 설치, 30~50Lux)
	내부공용공간의 조도확보(동별출입구 50Lux, 현관.계단실.복도 100~159Lux)
	지하주차장의 조도확보(130~200Lux)
	쓰레기 처리장소의 조도확보(50Lux)
	CCTV설치
	비상벨 설치(지하)
	여성안전귀가로의 연계성 (주요교통시설,단지입구, 여성친화보도)
자연적 감시(시야확보)	

서울시는 여행시설인증 평가를 위해, 여행동반자(여성 건축가), 여행포럼단 및 여행프로슈머<sup>8)</sup>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2009년 여행화장실과 여행주차장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317개소(화장실 159개소, 주차장 167개소)를 현장평가 하고, 46개소(화장실 22개소, 주차장 24개소)를 여행 시설로 인증하였다. 이는 전체 현장평가대상 대비 27.76%의 인증률(화장실 25.79%, 주차장29.75%)이다. 서울시의 여행시설 인증은 여성친화도시의 도시기반 조성 영역에 여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설문(FGI: Focus Group Interview)자료를 바탕으로 인증시설 항목을 구성하고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역특화 단계로 적용시킨 사례로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인증과 평가 단계에 사용의 주체인 여성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유형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안산시 여성친화도 평가지표 구성 및 평가**

도시의 여성친화도 평가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제도 인프라적인 측면과 실제 도시기반 시설에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사용 편리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공공디자인의 측면이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입단계인 안산시의 여성친화 도시 모델 정립을 위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안산시의 자치법규 중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안산시는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민선5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의 제도적 측면과 기반시설에 대한 여성친화성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나아가, 익산시 및 여수시와 같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관련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8) ‘여행 프로슈머’는 지역사회 불편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 여성집단으로 도시환경 중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공공시설의 불편사항을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여성 참여형 거버넌스(Governance)의 예로 볼 수 있다.

표 6. 안산시 제도인프라 측면의 여성친화도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1. 제도인프라	성인지 통계의 반영여부	관련 정책의 발굴, 수립에 성별 통계자료가 반영되었는가?
	법제도의 내용 정비	도시 계획의 각종 법령에는 여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성차별적 내용은 정비되었는가?
	정책 결정기구의 여성참여	도시계획 관련위원회 및 해당부서의 여성 참여는 30%이상 되는가? 또는 여성의 참여가 권장되고 있는가?
	성별영향 평가 실시	도시의 주요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 반영하고 있는가?
	여성 참여형 거버넌스	여성 전문가 혹은 여성주민의 의사를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표 7. 안산시 제도인프라 측면의 여성친화도 평가 결과

구분	평가내용	안산시 평가결과
1. 제도인프라	성인지 통계의 반영여부	2010.10월 ‘안산 여성정책 욕구조사’실시 <sup>9)</sup> -안산시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3.6으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안전부문은 2.35로 취약하였고, 특히 밤길 안전은 1.98로 불안함을 보임. -성인지정책 및 예산편성을 위한 분리통계의 확보와 특성화 사업발굴을 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함.
	법제도의 내용 정비	2010.12월 안산시 자치법규 성인지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 및 타시도의 자치법규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 모색, 실질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정책 결정기구의 여성참여	2010.10월 기준 안산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는 23%로 경기도 기준 40% <sup>10)</sup> 에 비해 낮으며, 전체 91개 위원회 중 도시계획관련 20개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은 15.3%로 매우 낮아 적극적 개선 조치가 필요함.
	성별영향 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가 소수과제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나 성인지 정책 및 예산에 환류되지 않고 있어, 여성공중화장실 등의 여성 전용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성별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여성 참여형 거버넌스	위의 성별 영향 평가 등에 시민에 의한 모니터링체계가 부족하고,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8조(여성관련정보의 제공)’의 정보공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안산시 도시기반시설의 여성친화도 평가지표 구성은 평가 결과와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수립된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 중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의 구분을 적용하였으며, 양성평등시설의 확충과 셉테드 디자인(CEPTED Design) 및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내용을 적용하였다.

표 8. 안산시 도시기반시설규정의 여성친화도 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시설 및 내용	평가지표
2. 도시기반시설 규정	공공공간 (적용대상: 도로 및 가로, 광장, 공원, 공공건축의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1.보행자를 위한 인도의 우선적 확보는 반영되었는가? 2.Barrier Free개념에 입각한 무장애 디자인은 반영되었는가? 3.여성의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도포장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는가? 4.유모차 이용 및 자녀 동반 가족의 보행을 고려하였는가? 5. 여성우선 주차 면적이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6.휴게공간의 고려되었으며,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토록 하였는가?
	공공 시설물 (적용대상: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물, 버스승차대 등의 교통시설물)	1.여성화장실의 안전한 위치선정 및 충분한 변기 수의 확보가 명시되었는가? 2.여성화장실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3.대중교통 승강장 시설에 여성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게 하였는가? 4.공공 시설물의 재료 및 형태, 치수는 여성 등 약자를 고려하게 하였는가? 5.공공시설물의 성별 사용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성평등 시설의 확충 (적용대상: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1.여아와 남아의 취향을 모두 고려한 놀이공간의 확보가 권장되는가? 2.성인 여성과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이 고려되는가? 3.공원 및 녹지 내 성평등 보육공간 마련(어머니를 위한 수유실, 남성화장실 내 유아 돌봄공간 확보 등)토록 하고 있는가? 4.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가?
	셉테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1.여성과 약자가 사용하는 실내공간의 적정 조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2.공공공간의 시설물과 조경은 자연적 감시

9) 조사기관: 안산 YWCA, 조사대상: 안산거주 여성 501명  
조사방법: 면접을 겸한 설문조사 사용통계프로그램: SPSS13

10) '경기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에 관한 규정' 중 '제4조 여성위원 위촉비용)①담당 실.과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여성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적용대상: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가 가능한 높이와 형태로 유지토록 하는가? 3. CCTV,비상벨 등의 안전시설은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는가? 4. 공공시설물은 다양한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반영토록 하였는가? 5. 시각, 청각장애인과 휠체어, 유모차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고려하고 있는가?
---------------------	---

표 9. 안산시 도시기반시설규정의 여성친화도 평가 기준결과

구분	평가시설 및 내용	평가결과
2. 도시기반시설 규정	공공공간 (적용대상: 도로 및 가로, 광장, 공원, 공공건축의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1.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가로시설물의 통합을 통해 시설물의 점유율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자전거도로, 장애인의 동선을 분리 배치토록 하고 있고, 경계부의 단차를 최소화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포장재의 경우 친환경소재사용에 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다. 2.안산시 주차장 조례는 여성 및 영유아 동반차량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확보와 안전성, 주차규격 등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서울시 및 익산시의 경우 별도지정)
	공공 시설물 (적용대상: 벤치 등의 휴게시설물,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물, 버스승차대 등의 교통시설물)	1.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의 합은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서울시 여행인증은 여성 화장실내 기저귀 교환대, 손전조기 등의 설치물과 비상벨, 조도, 부수출입문 틈새에 대한 기준도 제시) 2.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치수 적용과 재료의 사용에 다양한 사용계층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 시설의 확충 (적용대상: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1.여아와 남아, 성인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반영된 공원 및 놀이시설 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2.공원 및 녹지 내 성평등 보육공간의 마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 3.가족전용 화장실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토록 하고 있지 않다.
	셉테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1.여성화장실, 주차장 등에 대한 실내조도 기준이 없다. (서울시 여행 화장실은 150-200Lux, 여행주차장은 130-200Lux) 2.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 셉테드 디자인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자연적 감시와 개방성을 확보하는 식재의 구성과 버스 승차대 등의 공공시설물에 투명한 재료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과 은행감독규정 등 특정 지역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다.

## 5. 결 론

### 5.1. 안산시 제도 인프라의 여성친화도

안산시는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체적인 성인지 통계의 마련이 미흡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의 개발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선정 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11년 성인지 통계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다.

또한 2010년 12월 안산시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법규 중 성차별적 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입법화(개정을 위한 상정 등의 절차) 등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sup>11)</sup>는 미비하다. 정책결정 기구의 여성참여도 중 여성 공무원은 25.2%(6급 이상 13%)로 경기도 전체 평균비율(전체 23.9%, 6급 이상 13.1%)과 비슷한 수준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은 23%로 경기도의 28.4%에 비해 낮은 편으로 평가 되었다.

여성관련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가 상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에 참여 할 여성전문가 및 여성시민의 인력집단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5.2. 안산시 도시 기반시설 규정의 여성친화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거나, 모범이 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여성들의 영유아 동행 및 사용, 안전과 관련된 공공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익산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여성우선 주차구역의 확보와, 안전성, 주차규격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여행 주차장 가이드라인은 여성주차면의 확보, 출입 용이성, CCTV, 실내조도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안산시는 여성관련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에 여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안산시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전성과 공평한 사용을 위해 셉테드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구체적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의 구성과 의무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여성친화도 평가지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주요 시정과제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여성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산시는 익산과 여수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성별 통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익산시의 '여성친화정책과, 대구시의 '여성 친화 조성 팀'조직의 예와 같이 추진체계를 승격,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별 통계 및 영향평가를 통해 여성의 일상에서 도시 공간으로 인한 불일치, 불편함, 불안감을 초래하는 요인을 발견, 제거하고, 안산시 여성시민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권상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 평형성 분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7
2. 김양희, 국가발전 정책의 젠더 메인스트리밍,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7
3. 최성일 외, 경기도 시·군별 가족여성통계, 경기도 가족여성 개발원, 2008
4. 서영주, 황치석,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평가 현황과 과제, 정책개발 29, 서울시, 2009
5. 유희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보고, 여송가족부, 2010
6. 주재선, 2009 한국의 성 인지통계, 연구보고 22,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9
7. 이미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연구보고, 여성부, 2009
8. 한정원,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9. 안산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산시, 2010
10.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안산시, 2010
11.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iansan.net](http://www.iansan.net))
12. 서영주 외, 서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평가 현황과 과제, 정책개발 29, 서울시, 2009

논문접수일 (2011. 2. 24)

심사완료일 (1차 : 2011. 3. 20, 2차 : 2011. 4. 20)

게재확정일 (2011. 4. 25)

11) 적극적 조치는 현존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